## 제 3 장 응급의학전문의 시험응시자격

제 7 조 (응시자격)

1. 1차 시험 응시자격

1. 논문 제출
2. 의사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국내외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 서 소정의 인턴 및 4년의 응급의학전공의 과정을 수료하고 전문의 고시 원 서접수 마감 전까지 전공의 기록부 및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여야 한다. 또한 원서접수 마감 전까지 ‘게재 예정 증명서’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 는 경우도 인정한다.
3. 연구실적물은 응급의학과 관련된 국내외에서 인정받은 학술지로서, 국내 인 경우 대한의학학술지 편집인 협의회에 등재된 학술지로 SCI급 학술지가 아닌 대학 학술지는 제외한다. 국외학술지는 SCI, SCI-E 및 PubMed 등재 학 술지만 인정하며, 대한응급의학회에서 발행하는 영문학술지(Clinical and Experimental Emergency Medicine, CEEM)는 PubMed 등재 학술지로서 여 기에 게재된 원저는 연구실적물로 인정할 수 있다.
4. 논문의 종류는 원저에 한정하며 1편 이상의 주저자 (제1저자 또는 책임 저자) 인 경우에만 인정한다. Brief report 및 short communication 도 원저 의 형식을 갖춘 경우에는 인정할 수 있다.
5. 전공의 중간평가 시험

(1) 4년간의 수련 기간 중 적어도 1차례 이상 대한응급의학회 고시위원회에 서 주관하는 전공의 중간평가 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. 해당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을 획득해야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.

1. 학술대회 및 원내회의

(1) 수련기간 중 총 4회의 학술대회에 참석해야 하며 이 중 대한응급의학회

학술대회 (대한응급의학회 춘, 추계 학술대회) 3회 이상을 참석해야 한다. 이 외 원내 학술회의 200회 이상을 참석해야 한다.

1. 교육 과정
2. 수련기간 중 본 학회에서 인증한 전문외상처치술 연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 (전문외상처치술 워크샵 인증 교육 : KTAT, ELS-trauma)
3. 수련기간 중 본 학회에서 인증한 전문심장소생술 워크숍을 이수하여야 한다. (전문심장소생술 연수교육 인증 교육 : ACLS, KALS, ELS-resuscitation)
4. 위의 필수 교육과정에서 획득한 크레딧을 포함하여 학회에서 인증한 교 육과정으로 수련기간 중 총 50 크레딧 이상 획득하여야 한다.

# (단 2021년 3월 이전에 수련을 시작한 전공의의 경우 교육과정 이수 관련하 여 이전 수련규정을 적용한다. (아래표 참조))

2021년 3월 이전에 수련을 시작한 전공의는 다음과 같은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 다.

1. 연수강좌

수련기간 중 본 학회에서 인증한 연수강좌에 3회 이상 참가해야 한다. 본 학회에 서 인증한 연수강좌 3회라 함은 원칙적으로 산하단체 연수강좌를 말하며, 연관 학회 연수강좌도 1회는 인정한다.

1. 워크숍, 심포지엄, 자격인증 교육과정

본 학회에서 인증한 전문외상처치술 연수교육을 이수하고 본 학회에서 인증한 전 문심장소생술 워크숍에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한다. 그리고 그 외에 본 학회에서 인증한 워크숍에 2회 이상 참여해야 한다. 그 외에 본 학회에서 인증한 워크숍 2 회라 함은 산하단체 워크숍이다.

1. 응급의학 관련 타 전문과목 전문의 자격 취득자 중 응급의학 수련과정을 3년 이상 수료한 자로서 상기 1), 2) 조항과 연수강좌 2회 이상, 학회에서 추

천하는 워크숍, 심포지엄 또는 인증자격증(ACLS 나 ATLS 등) 취득 등에 1회 이상 참여하여 조건을 충족한 자.

# <2011.12 이사회 결정>

*\* 응급의학 관련과목: 내과, 외과, 소아청소년과, 산부인과, 정형외과, 신경외 과, 심장혈관흉부외과, 마취통증의학과, 비뇨의학과, 신경과, 성형외과 (이상 11개과)*

제 8 조 (시험절차)

1. 응급의학 전문의 시험은 제 1차와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, 1차 시험에 합격한자에 한하여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.
2.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험에 불합격한자는 1회에 한하여 다음 회 전문의 시험에서 1차 필기시험을 면제한다.
3. 전문의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1차시험과 2차시험의 각각 총점의 60% 이상 득점자로 한다.